

미국의 재난관리체계와 경찰의 역할

- 뉴욕경찰을 중심으로 -

〈경찰청 경비교통국 경비계장 경정〉 장 전 배

1. 미국의 재난관리정책 개관

가.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

미국의 재난관리업무는 근본적으로는 각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되어 있어, 각 지방정부는 관할구역안에서의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지며 연방과 주법률 및 연방정부의 정책과 지침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활동을 전개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재난은 지방정부 주관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대처능력을 벗어나는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규모에 따라 제일 먼저 응원협정이 체결된 인접지방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며, 이것만으로 해결이 곤란할 경우에는 주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주정부차원에서도 해결이 곤란할 정도로 규모가 클 경우에는 사전응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인접한 주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이 역시 어려울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습을 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각 지방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상사태 관리를 위해

- 비상대비국(SEO : State Emergency Office 주단위)과 비상대비과(LEO) : Local Emergency Office)을 운용하여 평상시 비상대비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 재난발생시에는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주조정관(State Coordinating Officer)이 재난현장사무소에 위치하여 주의 대응·복구활동과 연방정부 등 다른 기관의 지원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연방조정관(FCO) 등과 직접 협의·조정하며,

- 각 지역의 요구사항이 합리적인지 확인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며,

- 재해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 비상관리센터 EOC(State Emergency Operations Center)

를 설치하여 각 지방기관 및 연방정부와 주의 대응·복구 활동을 조정한다.

나. 연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

1) FEMA(연방비상관리청)

FEMA는 1979년 설립된 연방차원의 비상업무 관리기관으로 재난 비상사태 발생시 각 연방기관등이 보유한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방기관들의 재난대응활동을 조정하고, 비상관리를 위한 훈련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모든 수준에 있어 재난에 대한 예고와 준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가) 임무

재난의 위협에 기초하여 재난완화·준비·대응·복구를 위한 포괄적인 재난관리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지원함으로써 모든 위협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줄이고, 미국내 시설을 보호하는 것을 조직의 임무로 삼는다.¹⁾

나) 조직

대통령이 임명하여 국회의 비준을 거친 청장을 중심으로 교육 및 소방계획국, 보험관리국, 국가준비계획국, 주 및 지방지원계획국, 자원관리 및 행정국과 청장을 의장으로 하는 연방비상관리자문위원회를 두어 FEMA계획에 정책적 조언과 시정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99. 10월 현재 FEMA에는 약 2,6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재해발생시 4,000여명의 임시 또는 예비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재난대비와 복구활동에 동참한다.

또한 지방조직으로 전국에 10개의 지방청을 두어 50개주를 10개 광역권으로 묶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FEMA지방청은

- 재해발생시 기술지원 및 피해조사
- 관할구역 공무원, 주민들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 주 정부와의 협조체제를 유지등을 임무로 한다.

1) FEMA의 구체적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광범위한 재해계획 담당, 재해대비·피해경감·대처·복구시 주와 지방기관 지원
- 대통령이 주요재해나 비상사태 선포시 연방정부 지원을 총괄
- 재해에 있어서 연방과 주, 지방행정부 관리들의 전문적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훈련, 교육, 기법을 제공
- 기상재해와 가정안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의식개혁사업의 개발
- 핵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활동의 통합조정
- 핵발전소와 위험물 사고, 방사능 사고에 대비하여 민방위 활동을 통제
-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계획과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자원의 동원을 총괄
- 화재로부터 국가의 손실을 경감
- 국립홍수보험사업(National Earthquake Hazards Reduction Program)의 대표기구
- 국립비상식량·대피위원회(Emergency Food and Shelter National Board)의 의장기구

< 표 1 > FEMA 지방청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보스톤	뉴욕	필라델피아	아틀란타	시카고	달라스	캔사스시티	덴버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2) 연방차원의 재난관리

가) 연방대응계획(Federal Response Plan)

대통령에 의해 “주요재해(Major Disaster)”로 선포되면 연방정부는 해당지역에 대하여 구호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연방차원에는 27개의 재난구조 및 지원활동 관련기관²⁾이 있어, 재난지역에서 주로 요구되는 활동을 12가지의 비상지원기능(Emergency Support Functions, ESFs)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기관의 다양한 활동이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는 경우 중복, 낭비 등 비효율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 연방기관 합의에 의해 연방대응계획(Federal Response Plan)을 수립하여 재난발생시 이를 활용하고 있다.

연방대응계획은 재난에 대비하여 주와 지방정부의 대응과 복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에서 자원을 동원하고 행동하는 매카니즘을 담고 있으며, 재난관련 연방기관들의 역할을 적시하고 있어 연방대응계획에 따라

개별 법령과 스테포드법(The 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As Amended, 42 U.S.C. 5121 et seq.)이 집행된다.

연방대응계획은 대통령이 주요재해 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연방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이는 중대한 사고가 예견될 때 현실적으로 가동되며, 비상지원기능(ESF)을 1차적 지원기관과 2차적 지원기관을 지정해 수행하고 있다.³⁾

나) 연방대응계획의 운용체계

연방대응계획은 연방재난관리 주무기관인 FEMA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FEMA의 청장 또는 부청장, 지역사무소의 장은 재난발생시 자체 판단에 의해 FRP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동시킬 수 있으며, 연방대응계획의 운용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연방차원의 기관 및 임무

- FEMA 본부
- CDRG(Catastrophic Disaster Response

2) 연방대응계획의 27개 파트너 기관으로는 FEMA와 농림성, 상무성, 국방성, 교육성, 에너지성, 보건성, 주택과 도시개발성, 내무성, 법무성, 노동성, 국무성, 교통성, 재무성, 재향군인회, 국제개발청, 미국적십자사, 환경보호청, 연방통신위원회, 총무처, NASA, 국립통신기구, 핵규제위원회, 인사관리위원회, 중소기업청, 테네시개발청, 우정성이 있다.

ESF #12. 에너지 : 에너지성

Group) 대규모 재해대응그룹
대규모 재난대응을 위한 연방차원의 조정 그룹으로 FEMA 청장 주재하 연방대응 계획에 관련된 기관 대표로 구성된다. 각 기관의 장에 직접 접촉 가능하며, 정책 및 자원운용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

- EST(Emergency Support Team) 비상사태 지원팀
FEMA 정보·조정센터에서 운용되는 기관합동 지원본부로써, CDRG, FCO, ERT에 기관별 자원운용에 관한 사항 제공하고, 현장작업 지원을 위한 인력·자원 파견을 조정
- FCO(Federal Coordinating Officer) 연방조정관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는 연방공무원으로, 재해현장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여 주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SCO와 직접 협의,

조정하며,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고 대응과 복구활동을 조정

(2) 지방정부 차원의 기관 및 임무

- ROC(Regional Operations Center) FEMA지방청 상황관리센터
FEMA 지방청장에 의해 가동되며, 피해 입은 주지역을 관할하는 FEMA 지역사무소에 설치한다. FEMA 지방청 직원과 ESF를 지원하는 주요기관으로부터 파견된 대표로 구성되며, DFO의 설치 이전에 연방대응·복구 작업을 조정
- ERT-A(advanced Element of the Emergency Response Team)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선발팀
FEMA 지방청장이 설치하여 재해현장에서 최초로 대응하는 집단으로 재해현장사무소 DFO를 설치하고, DFO에서 운용되는 ERT의 핵심사항을 제공하며, 상황평

3) 비상지원기능별 1차적 지원기관은 다음과 같다.

- ESF #1. 수송 : 교통성
- ESF #2. 통신 : 국립통신체계
- ESF #3. 공공사업 및 공병 : 미육군공병대, 국방성
- ESF #4. 소방 : 산림청, 농림성
- ESF #5. 정보와 기획 : FEMA(연방비상관리청)
- ESF #6. 대규모 치료 : 미국적십자사
- ESF #7. 자원지원 : 총무처
- ESF #8. 건강과 의료서비스 : 보건성
- ESF #9. 도시지역에서의 수색과 구조 : FEMA
- ESF #10. 위험물질 : 환경보호청
- ESF #11. 음식 : 음식과 건강청, 농림성
- ESF #12. 에너지 : 에너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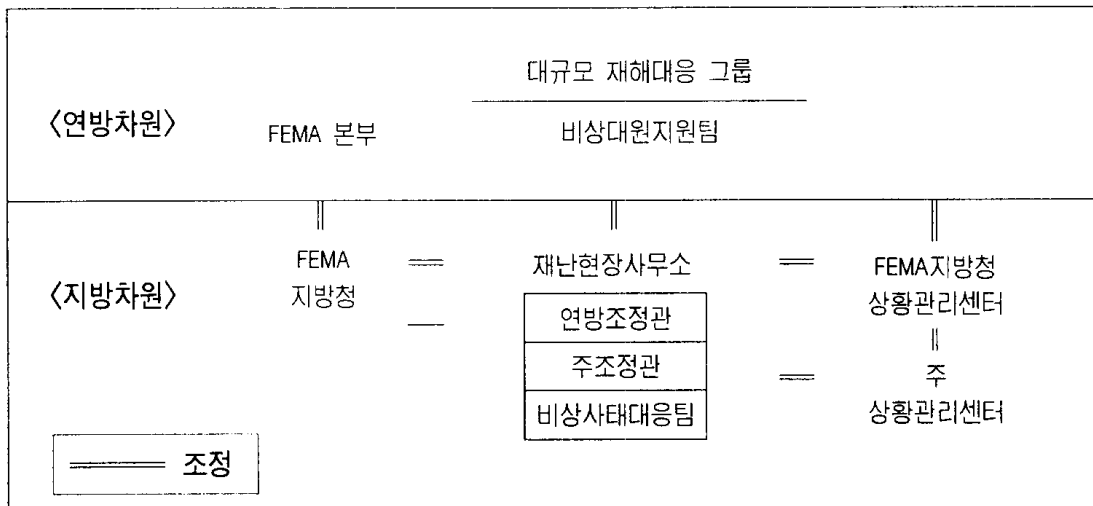
가 활동을 지원하고, 주 공무원과 초기단계 조정한다.

- ERT(Emergency Response Team) 비상사태 대응팀
FEMA와 다른 연방기관의 파견자로 구성되는 기관합동 차원의 대응팀으로 각 ESF의 연락관을 포함하며, 주요기능 영역에 따라 조직된다. 재해상황에 기초하

여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가동되며, 상황이 중대한 경우 국가차원에서 지원되는 활동을 수행한다.

- 기타 피해입은 주에서 운용하는 주조정관(State Coordinating Officer)와 주비상관리센터(EOC, State Emergency Operations Center)가 있다.

<연방대응계획 운용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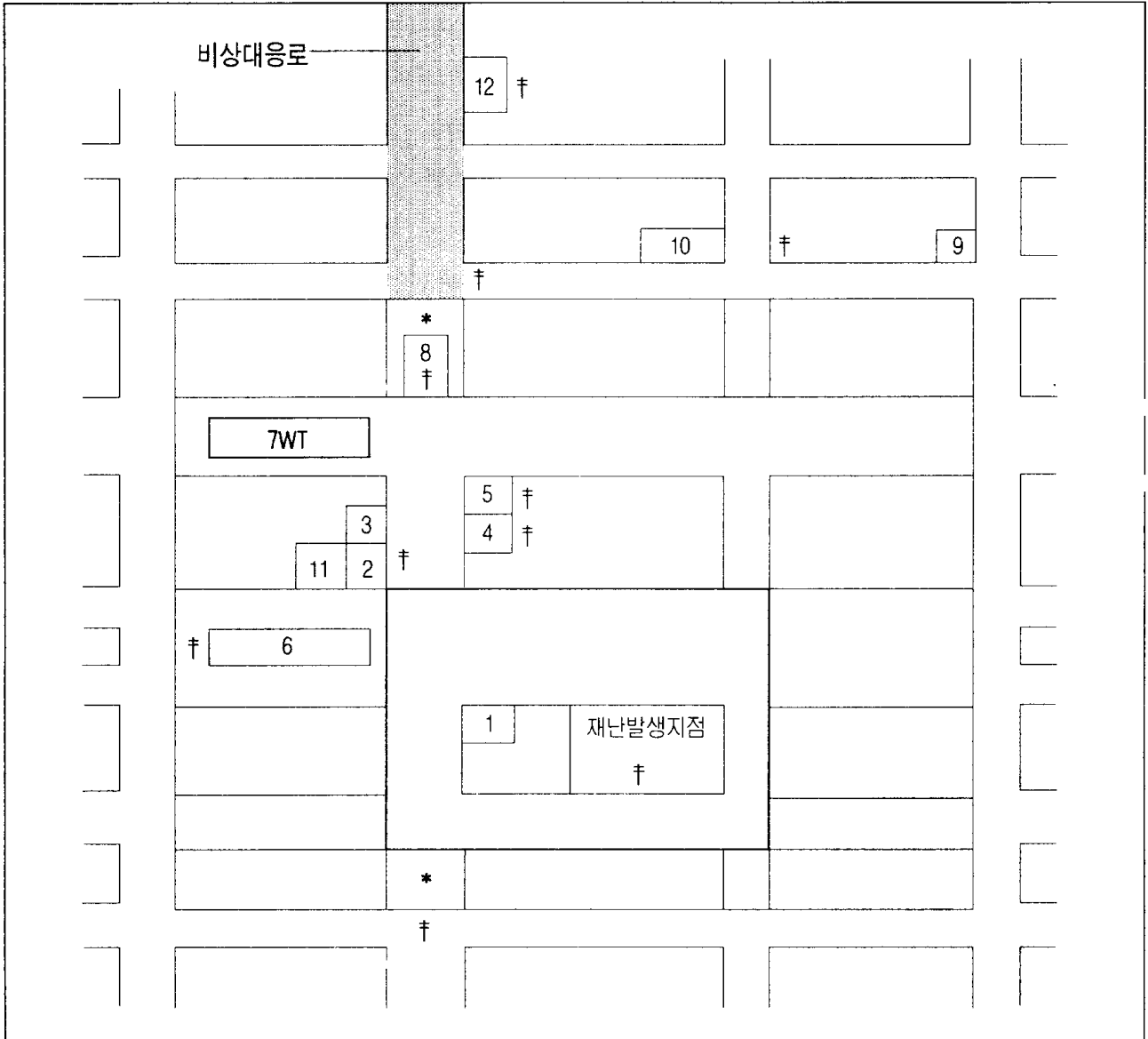
3) Stafford 법과 연방정부의 재난관리 지원

재난발생시 연방차원의 지원을 규정한 연방법률로는 The 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As Amended, (42 U.S.C. 5121 et seq.)가 있어, 주요 재난발생시 발생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 의료, 피해복구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 제1장 재난 등에 관한 정의
- 제2장 재난대비를 위한 지원
- 제3장 주요재해와 비상지원 관리
- 제4장 Major Disaster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 제4-A장 비상사태 지원 프로그램
- 제4-B장 비상사태 대비
- 제5장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뉴욕경찰의 비상현장 배치도(예시)>



- 범례 -

- | | | | |
|-----------|---------------|-------------|------------|
| † 근무자배치 | * 통제지점 | — 외부통제구역 | — 내부통제구역 |
| 1. 전진기지 | 2. 임시지휘본부 | 3. 프레스센터 | 4. 응급의료소 |
| 5. 임시영안소 | 6. 앰بول런스 주차장 | 7. 주차장 | 8. 부대접결지 |
| 9. 임시대피시설 | 10. 정보센터 | 11. 기관합동지휘소 | 12. 교통통제본부 |

이 법에 의하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의 지사는 재난상황이 심각하고, 대규모여서 주정부 능력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경우 비상사태를 선언하도록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지사의 요청을 근거로 대통령은 재난을 선포할 수 있다.(Title 42.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 chapter 68--disaster relief, subchapter IV--emergency assistance programs 5191. Procedure for declation))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대통령은

- 연방기관을 동원, 주·지방정부의 재난관리노력 지원
- 연방·지방정부, 사조직의 모든 재난구조 지원활동 조정
- 피해지역에 기술적 지원 및 자문
- 연방기관을 통한 긴급지원
- 잔해 제거 및 임시수용시설 지원
- 지방정부에 의약품, 음식 등 기타 소비재를 지원할 수 있다. (Stafford Act 5192. federal emergency assistance)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재난선포 즉시 연방조정관(Federal Coordinating Officers)을 임명하여 피해지역에서 활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방조정관은

- 피해지역에서 긴급히 필요로 하는 지원의 승인,
- 필요한 현장사무소의 설치,
- 지방, 주정부와 적십자사, 구세군, 메노파

의 재난서비스 등 구조와 재난지원기관을 조정할 수 있으며,

- Stafford법과 대통령이 부여한 권위에 의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은 Stafford Act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주지사에게 주조정관을 임명하여 연방정부의 지원활동과 주, 지방정부의 지원활동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Stafford Act. 5143. Coordinating officers)

2. 재난발생시 미국경찰의 역할

- New York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상 재난발생시 미국경찰의 자치단체의 형태에 따라 상이하다, 하지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기본책무로 하는 데는 차이가 없으며, 활동영역이 얼마간 다르지만 사태에 대응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미국에서의 각기관의 역할범위와 권한은 형식적으로 규정된 법에 국한되기 보다는 주민에 대한 봉사과 신뢰획득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명 주민에 대한 희생과 봉사는 주민의 사랑과 존경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적극적 봉사와 자기희생적 노력은 해당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첩경으로 여겨진다.

여기서는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주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고 있는 뉴욕경찰을 중심으로 경찰의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New York시의 비상관리체제

1) 비상관리위원회(Mayor's Emergency Control Board)

뉴욕시는 비상사태 발생시 시의 자원과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961. 12. 22, 행정명령 107호로 비상관리위원회(Mayor's Emergency Control Board)를 창설하였으며, 1977. 4. 20, 행정명령 83호로 경찰위원장을 비상관리위원회의 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

비상관리위원회는 시장을 의장, 경찰위원장을 지휘관으로 시 상황관리책임자, 부시장, 해당기관의 장, Con Edison, 적십자사, 브룩클린 가스연합, 뉴욕 전신 등 사기관 또는 자원 봉사기관의 책임자로 구성된다.

2) 비상관리실(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OEM)

비상관리실(OEM)은 비상관리위원회(ECB)의 집행기구로 뉴욕시경내에 설치된다.

3) 비상관리체제의 가동

시장, 경찰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ECB를 가

동하여, 해당기관에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상위직급자로 연락관을 운용해야 한다.

4) 뉴욕시 비상관리계획(Mayor's Plan)

비상시 관련기관의 행동을 조정하기 위해 뉴욕시는 ECB외에 Mayor's Plan을 운용하고 있다. 비상사태발생시 이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현장조정관(On Scene Coordinator)

현장에 진출한 순찰부서의 최상급자는 현장조정관이 되어 임시지휘본부의 설치(필요시 작전팀에 지휘본부용 차량을 요구)한 후, 상황을 간략히 분석한 뒤 관련기관에 통지여부를 결정, 필요한 인원, 장비를 요구하고,

- 경찰통제선을 설치하여, 출입금지구역을 설정,
- 경찰통제선 밖에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경찰통제선안 출입금지구역 밖에 기자, 피해자 등의 친지를 수용할 프레스센터를 설치,
- 프레스센터 담당간부를 지정하여 피해자, 탐문자·피탐문자 등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록유지, 프레스센터, 정보센터에 있는 관련공무원들에 자문, 프레스센터, 정보센터에 비상관련 정보, 요구사항 전달
- 혼잡과 작업방해 방지를 위해 경찰통제선

밖에 공무용 주차구역 설치

- 감독자를 지정하여 사상자 또는 갇히거나 실종자에 대한 감식, 확인, 기록유지, 관리
- 응급의료기관과 협의, 현장의료소 및 임시 영안실 설치
- 주거손실로 공공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조사, 리스트 정리하며, 대피대상을 조사하고 수도·가스·전기 등 공익사업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 피해자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타기관, 부서의 책임자

도착즉시 현장조정관에 통보하고, 현장조치 또는 경고여부 결정시 현장조정관과 협의하며, 조치한 내용을 현장조정관에 통보한다.

○현장지원 책임자

지원되는 인력,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현장조정관에게 통보하고, 다룰 비상대응팀 및 구조작업자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사상자, 갇힌 자, 대피자 등을 현장조정관에 통보한다.

○인명 구조

화재시에는 소방간부책임하에 실시하고, 그 외의 경우는 경찰간부의 책임하에 실시하며, 모든 기관은 이에 협력해야 하며, 구조책임자는 구조내용을 현장조정관에게 즉보한다.

○보건, 건설, 환경보호, 경찰, 소방, 공익사업부서에서는 현장 및 현장주변에서 피해·영향·잠재적 위험지역을 조사한다.

○공익사업부서

필요시 현장조정관과 협의하여 개스, 스팀, 수도, 전기를 차단하며, 이 경우 주거자에 미리 통보하고, 메스컴이나 경찰차량의 확성기를 이용하여 주민에 경고하고, 회복시에 다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대 피

보건, 건설책임자는 현장조정관, 보건담당관과 협의하여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대피지역, 해당인구, 환자 유아 노인 등, 대피기간, 임시수용소와 급식 및 의복지원, 수송, 대피자에 의복 및 재산문서등의 소지지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피시 제복직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인사지원부서는 대피자에 음식, 수용소, 의복등을 지원하며(적십자사와 협력), 이를 위해 학교, 창고 등 적당한 대피장소를 관리한다.

응급의료부서는 환자에 앰블런스를 지원하고 병원시설 이용을 준비한다.

○보고·통보

현장조정관은 작업팀과 프레스센터에 있는 공보책임자에게 비상사태 관련상황을 전화로 수시통보하며, 발생지역 경찰서장은 경찰위원장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재난발생시 뉴욕경찰의 임무

경찰의 재난, 긴급사태 발생시 다음과 같은 특별한 임무와 책임을 진다.

- ① 생명과 재산의 보호
- ② 부상자와 갇힌 사람의 구조(화재중 구조는 소방국 주관)
 - 부상자를 위한 의료지원, 피난자를 위한 수용시설 마련
- ③ 인적, 물적 피해 확대의 방지
- ④ 비인가자의 출입금지지역 출입 통제
- ⑤ 사태발생지역 및 주변 질서유지
- ⑥ 사태발생지역의 교통통제
- ⑦ 사체보호(관리)
 - 현장에서 보호, 영안실로 이송, 감식, 친척에게 통지
- ⑧ 재산의 보호
 - 사상자의 소지품, 대피한 건물, 파괴된 재난현장, 약탈예방
- ⑨ 안전치 못한 건물의 대피
- ⑩ 범죄가 관련된 경우 수사
 - 범죄자의 체포, 억류
 - 증거의 수색, 수집과 보호
 - 목격자 탐문
- ⑪ 다른 정부기구, 공익사업, 관련된 비정부 기관에 통지
- ⑫ 적절한 기록의 준비
- ⑬ 사건현장에 동원된 모든 인력에 대한 조정기관 역할 수행

다. 뉴욕경찰의 재난관리체계

1) 초동조치

- 최초 현장에 도착한 정복경찰관
현장상황을 지령실에 통지, 응급현장구조 등 초동조치, 해당기관에 연락, 경찰서 desk officer에게 보고 등
- 후속도착된 경찰관
구조, 응급지원, 대피, 교통통제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지시 또는 수행
- 최초감독자
 - 현재까지 취해진 행동을 검토하고 추가로 인력, 장비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 무선지령자를 호출하여 현장과 비상대응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지정해주고, 부대 집결지, 주차지역 등을 지정
 - 임시 본부를 설치하고, 임시본부용 차량을 요청
 - 통신부서 지령자와 작전팀에 임시본부의 위치, 가용통신수단, 현재상황, 요구되는 특수장비, 추가 소요인력 등을 통지
 - 정복근무자를 감독하고 임무를 할당하여 구조작업을 지원
 - 발생지구에 위치, 피해, 요청되는 인력과 장비를 통지
 - 피해지역에 위험하거나 손상되기 쉬운 설비가 있나 관할경찰서에 자료를 검토토록 요청한다.
 - 재난키트, 임시본부 깃발, 랜턴 등을 요청
 - 통신부 지령자, 작업팀과 연락체계를 유지

- 통신부로부터 피해지역에 위치한 위험·민감물질의 위치에 대한 리스트를 파악
- 사건관련 모든 가용정보를 출동한 지휘관에게 인계

여기에는 사태의 상세내용, 취해지거나 기대되는 활동,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인력, 장비, 당면 현안 등이 포함된다.

- 출동한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활동 지속

○부대집결지 및 동원차량 주차장의 지정

사태발생시 사태를 처리하는 책임자는 현장에 도착한 각 근무자들이 작업현장으로 투입되기 전에 집결할 인력 장비의 사전집결지를 지정하고, 동원차량들의 주차장도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지정한다.

2) 재난현장관리

가) 현장조정관 On Scene Coordinator

급작스런 재해나 비상사태 발생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태현장 처리를 위해 참여하는 각부서와 시의 다른 기관, 각종 민간차원의 행동을 긴밀히 조정하여 재난관리를 위한 노력의 중복과 낭비를 막도록 현장조정관을 운용하는데, 현장조정관은 각 기관간 책임을 정하고, 현장에 파견된 모든 인력의 활동을 조정한다.

대규모 재해발생시 뉴욕시경 순찰국장은 관련된 모든 부서의 지휘관과 현장에 진출한 각기관 대표자의 지원(보좌)을 받아 시의 모

든 관련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는 현장조정관이 되며, 경찰위원장, 제1부위원장, 경찰청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상급자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다른 상급자는 조언만을 행할 수 있으며, 타부서·기관의 대표들은 현장조정관에게 자신들이 행하거나 지시한 또는 추천한 활동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현장조정관의 구체적 책무는 다음과 같다.

- 순찰, 수사, 교통, 특수임무부대, 통신, 여타기관과 비상관리실의 책임간부의 보좌를 받아 경찰업무를 처리
- 비상사태시 공조를 위한 시장계획에 의한 현장조정관의 임무
 - 필요한 활동과약을 위한 현장 점검
 - 비상대응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 관련 각부서의 활동 조정
 - 다른 시, 공공기관의 노력 조정
 - 사상자 관리, 프레스센터, 정보센터 설치, 혼잡통제 등을 위해 순찰부서 책임간부를 지정
 - 비상출동로와 연결로의 소통확보를 위한 책임간부 지정
 - 비상관리실과 관련기관, 부서를 조정할 기관합동 지휘소 설치
 - 프레스센터의 설치 및 대변인의 지명을 위하여 공보책임자와 협의

나) 기능별 현장임무

○순찰부서 책임간부

임시 영안소, 현장의료소, 프레스센터, 정보 센터, 경찰통제선, 재산복구, 혼잡통제 등을 담당

○ 수사 책임자

- 형사를 지휘하여 피해자의 확인(감정), 사고원인 수사, 범죄와의 관련여부, 증거의 보존, 재산의 보호, 탐문 등 수사와 관련된 업무수행,
- 다른 수사기관과의 연락관 유지,
- 활동내용과 현장의 상황을 현장조정관에게 보고
- 교통담당 책임간부
- 비상출동로의 유지를 위해 비상출동로상에 교통통제본부를 설치
- 상황에 따라 교통량을 우회시키거나 노선을 변경
- 비상출동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적절한 순찰활동
- 추가적인 교통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주변을 순찰
- 임시지휘본부, 통신부 지령책임자와 교신유지
- 임시본부에 활동내용, 현장상황, 인력·장비 추가 필요성을 통지
- 비상출동로상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헬기를 이용할 수 있음

○ 정보부서

- 사태발생지역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현장조정관에게 제공

- 사태가 범죄와 관련된 경우 수사부서의 수사활동을 지원

○ 통신책임간부

- 모든 임무부서와 임시본부에 무전기 등 통신설비를 제공

○ 구조 등 특수임무부대

- 화재중을 제외하고는 긴급출동팀간부가 구조와 비상작전을 지휘하고, 임시본부와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

○ 비상관리실

모든 활동팀의 활동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현장조정관에게 시의 다른 기관, 부서의 활동을 자문

- 현장에 근접한 곳에 통신설비를 갖춘 기 관합동지휘센터의 설치
- 사태발생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지하고, 현장에 나오도록 조치
- 사태관리기간 활용될 필수적인 자료를 수집, 배포
- 기술·인적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장조정관의 지휘활동 지원

○ 지역사회 관련업무

해당지역의 지역사회경찰활동 담당자는 발생현장에 출동, 현장조정관의 참모로 활동

- 지역사회 지도자, 집단과 공조하여 혼잡 통제를 지원
- 현장조정관의 지시에 따라 비상관리활동

이나 절차 등을 지역사회지도자·집단에 고지

- 사건 발생범위내에 있는 중요한 인물이나 조직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
- 피해자 확인과 친지연락을 통해 실종담당팀을 지원
- 피해자와 가족 상담을 위한 사무 조정
- 대피와 복귀에 관한 절차, 정보를 전파
- 비상사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유연비어 통제 지원

○비번자 동원

경찰위원장, 경찰청장은 사태발생시 비번자 동원명령을 내릴 수 있다. 비번자는 항상 비번자응소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동원지점에 응소하면서 휴대중인 응소카드를 소집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집관은 응소카드에 체크하고 준비한 임무할당용지에 따라 임무를 부여하고, 근무투입, 철수시간 등을 기록한다.

다) 임시본부

○임시본부의 설치

현장의 최상급자는 재해가 발생하여 경찰활동이 필요한 기간중 재해관리를 위해 가장 적합한 장소에 임시지휘본부를 설치하여야 하고, 임시본부의 정확한 위치는 통신부를 통해 순찰, 임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시본부에는 상황에 관한 모든 정보가 집결되고, 경찰위원장, 경찰청장 또는 다른 기관, 부서의 책임자에게 관련상황을 정확하게 제공하여 적

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시본부 설치시 고려사항

임시본부 근무자수, 대응기관수, 전화이용회선수, 예상 피해자, 행정적 업무를 위한 공간, 임시본부 설치 기간, 주차능력, 실제상황발생 현장으로부터의 거리, 여타 시설 이용의 편의성, 날씨에 의한 영향 등을 판단하여야 하며, 임시본부의 위치나 규모등이 부적합한 경우 적합한 장소로 이전하고 정확한 이전사항을 모든 관련기관, 부서에 통보한다.

○임시본부 근무자 인사발령

인사부서에서는 현장조정관의 지휘아래 감독, 기관간 연락, 행정, 통신 등을 처리할 경감, 경위, 경사 등과 수사, 정보부서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현장본부, 작전사무실

대규모 상황인 경우 재해의 규모, 대응조치 필요기간, 임시본부의 크기, 위치 등을 고려하여 임시본부 이외에 현장본부와 작전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조정관과의 연락유지를 위해 임시본부에 연락책임자를 지정한다.

○임시본부 비치서류 : 카드화일이나 컴퓨터화된 리스트를 통해 관리

- 부상자 보고서,리스트
- 사망자 보고서,리스트
- 대피자 카드(이름, 주소, 대피장소)

- 탐문대상자 목록
- 서무담당경위는 리스트와 보고서의 정확성을 확인
- 인근지역 지도
 - 피해지역, 경찰통제선 범위, 다양한 작업팀의 위치 등 파악에 유용
 - 본부차량에도 복사본 비치
- 임시본부 기록유지시 고려사항
 - 추진사항을 연대기순으로 담당자의 필사로 기록
 - 다음 사항을 기록
 - 기록을 유지하는 담당자, 현장에 도착된 시간, 지휘자의 확인. 임시본부가 설치된
 - 시간과 위치, 전화번호
 - 다른 지휘부나 팀에 통지한 기록
 - 추가적인 인력, 장비에 대한 요청
 - 현장에 도착한 상급 간부
 - 임시본부 간부, 다른 시, 주, 연방기관과 공공기관의 공무원 확인
 - 특이한 사항
 - 지시사항, 활동내용, 사용되거나 현장에서 개발된 절차
 - 인력할당이나 변화사항은 세부기록장부에 기록
 - 임시본부 철수시 일자, 시간, 철수결정자 기록

○ 통 지

- 보고서에 친구, 친척 등 통지받을 사람의 이름, 주소, 관계기록
- 모든 피해자가 확인되었거나, 임시본부를 철수할 경우 관할 경찰에 보고서를 인계

라) 재해현장 필요장비

장비요청시 현장조정관은 장비의 종류와 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원부서는 요청받은 장비를 임시본부를 통해 작전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장비는 부대집결지나 임시본부에 인도되어 용도를 기록한후 현장에 투입된다.

(1) 통신장비

비상사태 초기단계에는 통신이 극히 중요하다. 현장 및 임시본부 등 모든 근무자에 대하여 유무선 통신장비를 준비하고, 임시 지휘본부 차량, 대중연설용 트럭, 휴대용 확성기 등을 비치한다.

(2) 특수임무부대

(가) 특수임무부대의 장비

응급구조트럭, 무선응급순찰트럭, 조명트럭, 발전트럭, 선박, 헬리콥터, 건설사고대응차량, 고광도능력을 갖춘 순찰차

(나) 응급서비스팀 구조트럭

1kw 조명, 전선, 접합기, 발전기, 절단장비, 개스마스트, 산소마스크, 산소흡입기, 응급구조키트, 담요, 사다리, 수의, 공기구조재, 구조기구, 삽, 갈퀴, 로프, 노출복, 장갑, 헬멧, 위험

물 처리복 등

(다) 무선응급순찰차량 장비

조명, 구조선, 응급소생기, 산소, 담뇨, 개스 마스크, 구조·안전벨트, 노출복, 위험물처리복, 동물통제장비, 스쿠버 구조장비, 응급치료 키트 등

(3) 타부서 기관의 장비

장벽, 보트, 폭발물 처리차, 부츠, 버스, 범죄 현장조사도구, 제독차량, 발전기, 이동용 응급 조명시설, 특공대와 犬, 고광도 고속도로순찰차, 공중방송시설 및 공중카메라를 탑재한 헬리콥터-수송담당공무원, 공중수색, 비상출동로의 조사, 교통문제, 사진촬영, 대피방송, 수도, 전기, 개스 등의 공급차단 등 고지말, 말수송차, 랜턴, 오토바이, 순찰왜건, 무선순찰차 등

4) 경찰통제선과 혼잡경비

가) 경찰통제선

사고현장에서 작업과 관련없는 사람, 차량, 장비 등이 작업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지체 없이 경찰통제선이 설치되어야 한다. 대규모 상황인 경우 이종으로 경찰통제선을 설치하여 일반지역과 구분되는 출입통제지역과, 그 안에 다시 작업필수요원의 출입만을 허용하는 출입금지지역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1) 내부지역 또는 출입금지지역

재난이 발생한 현장으로 작업에 필수적인 사람과 장비에 대하여만 출입을 허용

(2) 출입제한지역

실제적인 경찰통제선으로 사태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비상출동로와 연결되는 도로쪽에 출입구를 지정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필요하면 반대편에도 출입구를 만들 수 있다. 근무자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처인력, 장비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경찰통제선

(가) 경찰통제선의 제원, 소요량 파악

경찰통제선은 다루기 쉽도록 14피트 길이의 목재 바리케이트나, 8피트 길이의 철제 바리케이트를 사용한다. 통제선이 필요한 경우 바리케이트係에 요청하면 바리케이트 60개를 적재한 운반차량으로 운반하며, 도로를 차단하기 위해 4개의 목재 또는 8개의 철제 바리케이트가 필요하며, 대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7개의 목재 또는 14개의 철제 바리케이트가 필요하다.

(나) 로프, 반사테이프 등 임시 바리케이트 대체물

폴리스 라인설치를 위해 규정된 인력·장비가 지원되기 전까지 임시 통제선을 설정하기 위해 모든 순찰조장 순찰차량의 트렁크에는 로프와 2롤의 반사테이프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경찰통제선 통행허용 인사·차량

시장 등 기관 책임자, 비상업무 종사자, 작

업관계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다. 다만 이경우도 출입금지지역이나 범죄현장은 통행이 제한된다.

나) 혼잡경비

재난발생현장에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운집하기 마련이다. 통제되지 않은 혼잡은 현장에서 추가적인 부상, 히스테리, 작업방해, 현장에서의 약탈 등 또다른 문제를 유발하므로 상황 통제를 위해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1) 출입금지지역

발생즉시 경찰통제선을 설치하여 비인가자는 모두 퇴장시키고, 인가자만 한두개의 통로를 통해 통행시킨다. 출입통로에는 책임간부가 입장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차단하고, 현장진척사항을 파악하여 작업자를 필요한 위치로 안내하여야 한다.

경찰통제선내에 학교, 교회등 다중운집장소가 있지만, 긴급한 위험성은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해산, 철수할 때까지 퇴장을 늦출 수 있다.

(2) 통제선의 조정, 재배치

경찰통제선 주변에 대규모 군중이 운집하여 혼잡해지는 경우 지역을 책임지는 감독자는 상황이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발전하기 전에 군중을 해산시키거나 소규모로 분산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통제선을 설치할 수 있다.

통제선이 뒤로 물러날 필요가 있는 경우 뒤쪽 필요한 지점에 통제선을 설치한 후, 앞쪽에 설치된 통제선을 철수하여야 한다.

(3) 차단선

모든 경우 군중은 작업에 방해를 주거나, 폭발, 건물붕괴, 방사선, 위험물이나 누출된 가스에 의한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해 재난현장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4) 기마경찰

기마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조정관은 기마경찰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말은 말수송차량을 이용해 신속히 수송되어야 한다.

5) 교통관리

가) 사전 비상출동로의 지정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출동팀의 신속한 출동과 부상자 후송등을 통한 인명,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비상출동로를 지정하여 사태발생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교통관리활동을 전개한다.

나) 비상출동로 지정 및 확보

(1) 현장지휘관

현장에서 미리 지정된 비상출동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중 이용가능한 도로를 단리지휘자에게 알려야 하며, 현장지휘관은 비상사태 인

근에 있는 도로관리를 위해, 관할 기준으로 도로 확보를 책임질 간부를 지정한다.

(2) 통신부 책임자

현장간부로부터 접근로를 통보받으면 사전에 지정된 비상출동로와 접근도로를 연결하여 비상출동로를 지정하고, 이를 현장지휘관, 소방, 응급의료부서 등에도 통지한다.

(3) 경찰서 지령책임자

비상출동로를 통지받으면 도로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지령책임자는 순찰차와 도보순찰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혼잡이 우려되는 교차로나 지역은 특별관리하여야 한다. 배치되는 경찰관의 수는 사태발생지역으로부터의 거리와 비상차량의 예상통행량에 따라 결정한다.

(4) 교통규제

○비상출동로에 배치된 경찰관은 필요한 규제를 행해 비상출동로상에는 교통혼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혼잡이 발생되면 다른 지시를 기다릴 필요없이 즉시 일반차량을 우회조치시켜야 한다.

○비상출동로가 건설이나 다른 장애로 적절치 못할 경우 배치경찰관은 통신부에 통지하여야 하며, 근무조장은 현장지휘관과 대체로의 지정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

○통제의 정도는 예상되는 비상출동차량과 인원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일부통제로 도로확보가 가능한 경우 완전한

통제를 할 필요는 없다.

(5) 비상출동로의 이용

비상출동계획에 의해 출동하는 차량은 가능한 한 지정된 비상출동로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인근지역의 경우 더 빠르고 직접적인 출동로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통제선은 비상출동로선상에 설치되는 것이 좋으며, 구조작업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인가받은 장비는 현장에 직접투입할 수 있다.

다) 교통통제

(1) 일반차량통제

일반차량이 대응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

- 사태발생지역내에 주차된 차량견인을 위해 견인차량을 활용
- 공보책임자는 라디오와 TV방송을 통해 사태발생지역을 피하거나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방송
- 책임간부를 지정하여 일반교통은 현장을 우회하도록 조치지원

(2) 대중교통

- 비상출동로를 통과하는 버스노선은 일시적으로 차단되어야 하며, 경찰통제선을 우회하도록 노선이 조정되어야 한다.
- 지하철은 비상사태의 본질과 위치에 따라 경찰통제선 밖으로 환승구와 출구를 조정해야 한다.

- 경찰통제선 외부에 대체가능시설이 있는 경우 시설봉쇄
- 경찰통제선에서 시설까지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바리케이트로 차단된 통로 설치
- 수송회사, 지하철공사 등에 해당정거장을 정차없이 통과하도록 요청
- 해당되는 공공운송시설 관할 경찰에 통지

6) 사상자 관리

가) 현장의료소

재난현장에 구조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현장의료소를 설치 하고, 앰블런스 주차장을 예상되는 부상자 처리에 적당한 규모로 확보한다. 현장조정관은 경감 등의 간부를 지정하여 현장의료소의 질서유지, 서무업무, 통신지원, 응급의료활동을 지원하고, 배치된 직원은 현장에서 치료받은 사람,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의식불명 환자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록유지한다.

현장의료소에는 앰블런스, 응급출동차량, 제독차량, 조명장치 등 차량, 스쿠터, 적절한 통신시설, 서무, 현장통신키트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나) 임시 영안실

현장조정관은 검시관과 협의하여 임시 영안실의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실

종자담당팀의 간부는 검시관사무소와 연락관 임무를 수행한다. 영안실은 현장응급의료소와 별개로 설치되어야 하며, 예상되는 사망자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경감 등 간부직급으로 책임자를 배치하여 질서유지, 행정업무처리, 사체보호 및 에스코트를 실시하며, 실종자팀은 사체의 감식을 담당한다.

7) 프레스센터와 정보센터 설치

가) 프레스센터

- 프레스센터 - 뉴스 미디어를 위한 정보 검색·배포의 중심 장소
- 프레스지역 - 뉴스 미디어를 위해 제공되는 현장이 보이는 장소

특이한 사건이나 비상사태발생시 수많은 뉴스매체 기자들이 동시에 모여들기 때문에 현장조정관은 프레스센터와 프레스지역을 설정하고, 공보책임자가 현장에 진출하기전까지 담당간부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간부는 비밀을 제외하고는 사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즉시 즉시 상세하게 기자들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공보담당 경찰부위원장은 현장 도착과 동시에 모든 정보의 배포를 담당하며,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조정관과 공보책임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기관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람도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안된다.

프레스센터와 프레스지역에는 언론인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위치는 출입금지지역 밖이지만 경찰통제선내에 임시본부 또는 현장이 잘 보이는 지역에 설치한다. 프레스센터에는 충분한 통신설비를 갖추고, 방송차량의 진입로를 확보한다.

공보실 직원은 프레스센터와 프레스지역에 배치되어 언론과의 연락관역할을 수행하고, 정복직원이 프레스센터의 지원과 통제를 위해 배치될 수 있다.

나) 정보센터

재해현장, 특히 다수의 희생자를 낸 재난현장에는 실종된 친지를 찾거나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문의하는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이므로, 순찰간부는 이러한 사람을 지원, 지도하기 위해 정보센터를 설치한다.

정보센터는 경찰통제선 밖에 설치하며, 실종자나 재산피해를 문의하는 사람을 수용, 이들을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고, 필요시 실종자담당팀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정보센터에는 사망자, 부상자, 대피자, 재산 피해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재난현장의 피해품 관리

가) 사체소지품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 소지품은 반드시 사

체와 같이 사체보관용 가방이나 관에 보관되어 영안실로 보낸다.

영안실에서 실종자 신원파악을 위해 사체를 검사할 경우 수사국 책임간부의 감독하에 검사하며, 영안실에서 발견된 재물은 비치된 물품기록명세서에 기록유지하며, 실종자팀에 의해 사체로부터 취득된 모든 물건은 신원불상자에 대한 보고서에 명기한다.

나)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

현장에서 발견된 모든 물품은 임시본부내 재산복구담당간부에게 전달한다. 전달에 앞서 발견자는 임시본부에 사체가 옆에 있던 경우 거리와 관계를 포함하여 자신이 물품을 발견한 장소와 활동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재물기록자의 명세서에 설명자료로 덧붙여진다.

책임간부는 실종자 확인팀의 지원을 받아 물품을 주의깊게 정리하여야 한다. 면허증, ID 카드, 명함 등 피해자의 신원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은 종이봉투를 이용해 개별적으로 기록한다.

귀중품은 플라스틱 안전봉투에 봉하고, 명세서에 기록한다.

9) 보고서

가) 상황실 통보

상황실은 24시간 가동되며 시장을 포함한 모든 기관에 필요정보를 전파하고, 현장의 인

력, 장비의 배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일상적이지 않거나 알 필요가 있는 사건은 반드시 상황실로 보고되어야 한다.

현장지휘관은 정복경찰관을 상황실과의 연락을 위해 지정하고, 연락관은 6하원칙(5Ws 1H)에 따라 상황실로 정보를 즉보해야 하며, 모든 상황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고를 지연하지 말고, 파악 즉시 보고한다.

나) 현장조정관

현장조정관은 매일 24:00시 기준 경찰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진척사항, 발견된 사상자, 재산피해정보 및 회복자, 피해 복구상황, 작업지역, 경찰인력·장비 동원사항 등 재해현장에 관한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동일한 내용의 복사본을 경찰청장, 순찰국장, 조직범죄통제국장, 공보책임자에게 전파한다.

다) 발생지역 관할경찰서장

경찰서장은 사태종결시 전반적인 사태의 발생에서 종결까지를 기록한 최종보고서 4부를 경찰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2개 이상 경찰서가 포함된 경우 Bourough지휘관이 보고서 제출
- 보고서에는 이전에 전화보고한 내용의 요지와 재산피해지역의 위치를 포함
- 다른 부서의 장이 작성한 보고서 첨부도 가능

라) 각 부서의 지휘관

순찰, 수사, 특수임무부대, 교통, 통신 등 활동한 부서의 지휘관은 현장지휘관에게 다음사항이 포함된 사후보고서를 제출한다.

- 현장에서의 활동사항
- 동원된 인력·장비
- 임무수행시 당면했던 문제점
-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

10) 모든 책임간부

임무를 할당받은 모든 책임간부들은 할당된 임무가 끝난 경우 조치한 모든 내용, 세부 내용, 곤란을 겪었던 문제, 향후 발전을 위해 제안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현장조정관에게 제출한다.

3. 정책적 시사점 : 재난대비활동의 조직화

재난 등 비상대비업무는 성격상 준비는 최악상황을 대비하고, 결과는 최선을 지향해야 하므로, 평상시 조직적이고 튼실한 대비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의 경우 현장에서의 재해관리업무를 조직화할 필요가 있는 바, 재해발생이후 상황종료시까지 현장지휘본부를 중심으로 재난대비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각 근무자들은 재해발생시 행동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여 재해현장에서 근무자들이 톱니바퀴 돌아가

듯 짜임새있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여 인명·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현장을 조기에 수습하여야 할 것이다.

가. 재난대응활동 관련자의 교육훈련 필요

1) 재난발생시 각 기관·부서·근무자별 역할 숙지

재난관리에서 각별히 중요한 것은 정보이다. 여기서 정보란 상황과 관련된 정보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선 상황발생시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여러 부서, 기관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경우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숙지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시스템 안에서 자신이 맡은 바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평상시 재난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각 기능별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체득하여야 한다.

2) 재해대비 기관합동 교육훈련 필요

위급시 활동사항을 평상시 훈련을 통해 체득함으로써 즉각적인 대응 가능하다. 오클라호마시에 있었던 연방건물 폭파사고 발생 몇

개월전에 오클라호마시 재난관련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연방 EMI(Emergency Management Institute)⁴⁾에서 단체로 재해대처요령을 교육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교육경험이 사고발생시 유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평상시 직장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통해 직급별로 재난사고발생시 조치요령을 습득하게 하면 실제상황발생시 산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재해발생시 개인별 조치사항의 매뉴얼화

재해발생시 경찰의 조직적인 대응 및 상황관리를 위해 근무자별 조치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각 근무유형별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매뉴얼로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업무편람에 재해에 대한 경찰의 대응체제와 재해발생시 개인별 조치요령을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근무유형 예시) 현장지휘관, 각 기능별 참모, 외근근무자, 교통근무자, 통신지령실, 외근감독자, 공보담당, 구조담당, 항공대, 특공대 등

나. 현장대응역량의 강화

1) 현장지휘본부

4) 연방차원의 비상관리업무 교육훈련기관으로 Maryland주 에미즈버그에 위치한다. 비상관리업무라 함은 재해, 재난뿐만 아니라 날씨, 기후 등 제반 자연현상, 핵, 발전소, 화학무기, 테러관련 등 기술적 위난상황도 포함하며, 연간 202개 과정에 5,689명을 교육하고, 학교외부에서 115,345명을 교육한다.('99년)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관할경찰관서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재난대비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재난발생부터 상황종료시까지 해당지역의 경찰력 운용은 재난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휘관 역시 재난 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현장지휘본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재해재난시 관할경찰관서장이, 대규모 재해재난시에는 지방청 장 또는 차장이 현장 지휘관이 되어 인접경찰관서 또는 진압용 지휘차량으로 각 지방청에 배정된 지휘차량⁵⁾을 활용하여 사고현장에서의 경찰활동을 지휘·조정하며,

각 기능별 책임간부는 조치 및 필요사항을 현장지휘관에게 보고하여 모든 현장활동이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지휘본부에는 관련되는 여러 기관의 추진사항과 협조필요사항을 파악하고, 필요시 해당기관의 대응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연락관을 운용할 수 있다.

2) 현장에서의 경찰대응활동

가) 구조 등 실무작업반

재해발생현장에 투입되는 경찰력으로 제대를 편성하여 현장구조 등 필요한 활동을 전개하고, 필요시 인명구조에 특공대를 동원하는 등 경찰이 보유한 인력·장비중 재난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활용한다.

나) 현장통제반

○통제구역의 설정

재해 발생현장에 경찰통제선을 설치한다. 대규모 재해시는 이중으로 설치하여 일차 통제지역인 출입제한지역과 이차 통제지역인 출입금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통제를 위한 바리케이트 및 수송차량 확보

현장통제에 필요한 바리케이트 일정수량을 확보하고, 바리케이트 운반차량을 사전에 지정하여 수송체제를 구축하고, 바리케이트 도착 전 임시통제선 설치를 위해 로프나 경찰통제선 테이프를 각 순찰차(근무조장 지정)에 비치할 필요가 있다.

○동원인력 안내지원 및 경찰집결지 운용

통제선에 1~2개의 출입구를 설치하고 안내직원을 배치하여 현장으로 동원되는 인력·장비를 필요한 현장에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제구역내 동원인력·장비의 집결지를 지정하여 상황과 임무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다) 수사 반

형사를 지휘하여 피해자의 확인(감정), 사고원인의 수사, 범죄와의 관련여부, 증거의 보존, 재산의 보호 탐문 등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5) '99.11월 현재 각 지방청에 배치된 지휘차량은 40대(중형 32대, 대형 8대)임

라) 교통관리반

○사전 비상출동로의 관리

지령실장과 협조하여 사고현장 뿐만아니라 사고현장으로 연결되는 제반도로에 대한 교통관리를 실시하며, 신속한 부상자 수송과 대응인력의 현지투입을 위해 비상출동로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교통관리

지정된 비상출동로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면 일반대중교통 노선까지 통제 또는 변경하여 사태수습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필요시 공보담당자와 협의하여 교통통제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려 주민의 협조를 얻는다. 교통통제를 위해 근무자를 광역적으로 배치하고, 순찰을 통해 비상출동로에 교통장애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마) 프레스센터 및 피해자 가족등을 이한 경찰지원센터 운용

현장지휘본부 주변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하고 상황과 관련된 경찰의 대응 및 조치(예정)사항을 언론에 전파하며, 공보책임자를 배치하여 정보의 흐름을 일원화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미연에 예방한다.

또한 피해자의 친척, 지인, 재산피해를 입은 사람의 관리, 정보지원, 협의를 위해 현장주변에 피해자 가족등을 위한 경찰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반정부적 성향을 띠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바) 정보 반

현장지휘본부에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접촉하여 재난구조, 혼잡통제, 인·물적 자원지원에 지역사회 집단·지도자와 협력한다.

지역내 위험물질을 파악하여 현장지휘관의 판단을 지원해주며, 피해자 등의 가족과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안출하고, 사태와 관련된 유언비어의 차단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사태수습을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재난관리를 지원한다.

사) 총괄 반

사상자 파악·관리(인적사항 파악, 이송, 처리상황 관리), 현장발견 유실물의 보관·처리, 각 부서, 기관의 동원인력·장비의 파악 및 배치, 각종 보고서의 작성, 요구사항의 정리·전파 등 제반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

한편 모든 작업팀들은 업무처리를 위한 서식, 대장 등을 사전준비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아) 기타

상황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지원반, 수송지원반 등을 운용한다. 특히 경찰헬기의 경우 수색, 구조, 물품수송,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수송등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경찰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기관의 업무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체적인 재난관리를 지원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지역별로 예상되는 재해, 재난유형에 따른 대비장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바, 수해가 잦은 지역은 구명조끼, 구명보트, 응급소생기 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하철, 위험물 취급업소 많은 지역, 다중운집시설이 많은 지역에는 방독면, 제독차량, 제독장비, 산소호흡기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 부산지역의 경우 제독부대의 인력, 장비를 정예화하여 고도의 준비태세 구축할 필요가 있다.

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훈련 실시

경찰관은 업무성격상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와 최초로 접촉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직업군으로 파출소, 교통 등 외근경찰관은 현장에서 발견된 부상자를 응급조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기 쉬우며, 재난관리법(제2조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긴급구조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관의 응급환자 구조 및 처치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실시되지 않아 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과정(보건복지부 주관 현재 시행중)>

교 육 내 용	시 간
1. 응급활동원칙 및 요령 2. 구조시의 지침 및 안전수칙 3. 구조호흡 4. 이물로 인한 기도막힘	1 시간
심장발작, 심장정지와 심폐소생	1 시간
다음 각호에 의한 각종 질환상황에서의 응급처치 1. 출혈과 충격 2. 화상 3. 중독 4. 뇌졸중 5. 간질발작 6. 열에 의한 손상 7. 골절·탈구·염좌 8. 응급당뇨환자	1 시간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 및 의료·보건관계법령 2. 기구 및 장비사용법	
계	4 시간

첫 전문성이 결여된 구조활동으로 환자에게 제2차적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도 야기될 우려가 있다.

신속한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신속·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경찰관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 재직중인 경찰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와 협조하여 각 경

찰서를 순회하면서 일정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신임경찰관에 대하여는 신임경찰관 교과목에 응급조치에 관한 교육을 신설하여 보건복지부, 대한응급의학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수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하여 응급조치에 대한 능력과 자신감을 높여주고, 향후 예상되는 피해자와의 법적 분쟁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⁶⁾

6)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 50조에 의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지침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교육을 추진중에 있음. 동지침에 의하면 시도지사 주관하에 교과과정을 운용하고,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현지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한다.